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 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Q**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계약 종류 및 내용 등)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산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방법,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정이용허락에 의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산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저작권자가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물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등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양도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 기간, 이용 범위, 이용 방법 등 계약의 범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이용허락과 단순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계약당사자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이용허락을 중복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반면, 단순 이용허락은 제3자와의 중복 이용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허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용허락에 의한 이용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점적 이용허락을 체결하였다 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고 제3자와의 이용허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정이용허락에 의한 이용방법이 있는데, 법정이용허락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법으로 정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처음 판매된지 3년이

경과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각 나라별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또는 사후 70년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 각 나라별로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동안만 보호해 주면 됩니다. 통상 쌍방의 보호기간 중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호기간 : 사후 50년까지)에서 미국인 저작자(보호기간 : 사후 70년까지)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50년까지가 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저작자의 저작물 역시 사후 50년까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기간 산정은 소급보호 규정에 의해 조금 복잡합니다. 종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음반협약의 가입에 의하여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 및 음반만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WTO/Trips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소급보호를 하게 되었고, 이로써 1996년 6월 30일까지 이용허락없이 이용해 오던 저작물(‘회복 저작물’)에 대해서 이후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구 저작권법(1957년 저작권법 제정 전)에서는 보호기간이 사후 30년이었으므로 1956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1986년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현재 생존중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저작물 역시 우리나라 국민 이상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위의 소급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결국 1957년 이후 사망하였거나 생존중인가의 것에 한정됩니다.

문의 : sycho@dpc.or.kr